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 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소음·진동관리법(‘22.12.30. 공포, ’23.7.1.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23.5.23. 공포, ’23.7.1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3.6.30 공포, ’23.7.1 시행)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소음측정값이 낮음)한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 (예시 1) 인증시험 값이 95dB인 경우 → 100dB(95+ 5dB) 적용, (예시 2) 인증시험 값이 101dB인 경우 → 105dB 적용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7월 1일부터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튜닝)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 기준을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 등을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 붙임 1.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내용('22.12.30 공포, '23.7.1 시행).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내용('23.7.1 시행). 끝

담당 부서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8)
		담당자	사무관	홍민강 (044-201-6928)



< 배기소음 표지판 부착 >

-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이륜자동차의 인증·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함(법 제31조제3항)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 >

- 자동차 소음정보전산망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법 제33조의2)
 - 자동차의 소음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구축·운영
 -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작 인증 기준을 연계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도입 >

- 이륜자동차 제작 후 운행 시 제작단계 인증 결과 값보다 5dB* 초과 금지(법 제35조제2항)
-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이륜자동차, ②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음방지장치의 튜닝을 하는 이륜자동차

< 포상금 지급 >

-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법 제46조의2)

< 배기소음 표지판 >

- (표시항목) ① 인증·변경인증 배기소음 시험 결과 값, ② 인증번호 또는 인증생략서의 인증생략번호, ③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 (배기소음을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
- (표시방법)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

< 소음정보전산망 >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MECAR)에 자동차 소음관련 정보 통합 구축(규칙 제39조)

< 과태료 부과기준 >

- (인증 결과 값 미표시·거짓표시) 2천만원 이하* 부과

* 1차 1,000만원 → 2차 1,500만원 → 3차 2,000만원

- (부과금액 상향) 소음허용기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

* (현행)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태료 금액 부과 → (개정)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시 +60만원

※ (예) 배기소음허용기준 4dB(A) 초과할 경우 : 1차 100만원 → 2차 140만원 → 3차 200만원

< 배기소음 측정방법 구체화 >

- 배기소음 검사방법을 급가속되는 시점부터 정지가동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측정하도록 개선

※ (현)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목표엔진회전수까지만 운전하여 소음측정 → (개선) 목표엔진회전수 도달 이후 정지가동상태로 돌아오는 구간까지 소음측정

- 또한 선택모드가 설치된 자동차는 모든 선택모드에서 소음도를 측정하고, 자동차의 배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배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미비점 보완

※ (현) ①보통모드에서만 소음측정, ②인도쪽에 위치한 배기관에서만 소음측정 → (개선) ①보통모드 외의 선택모드에서도 소음측정, ②도로쪽에 위치한 배기관도 소음측정